

영국·미국·일본의 학교도서관 기준 분석*

김 효 정**

〈목 차〉	
I. 서 론	
II. 학교도서관기준 설정과정	3. 공간과 시설
1. 학교도서관기준의 목적	4. 관리 및 협력체계
2. 학교도서관기준 설정의 주체	5. 학습기법(정보활용력)과 교육과정
3. 학교도서관 명칭	IV. 영국·미국·일본의 학교도서관
4. 기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	1. 영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특성
5. 학교도서관기준의 내용	2.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특성
III. 학교도서관기준의 구성요소	3. 일본 학교도서관기준의 특성
1. 적 원	V. 결 론
2. 자 료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담당할 사람을 기르는 聖業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학교교육은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여 그 인성과 창의력 및 잠재력을 개발하는 기관이고 학교도서관은 교수와 학습의 자료를 확보하여 인간형성과 창조적 정보활용력을 배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1996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함.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교도서관기준은 건전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목적, 기능, 직원, 공간과 시설 및 봉사 수준과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지침으로서 학교도서관이 교육과정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개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 알맞는 합리적인 학교도서관기준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미국, 일본의 최신 학교도서관기준의 설정과정, 구성요소 및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 학교도서관기준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분석대상자료는 영국의 경우 1992년에 개정된 기준인 “학습자료원”, 미국의 경우는 1988년에 개정된 기준인 “정보활용력”, 일본의 경우는 1959년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959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기준”(圖書館教育研究會, 1992)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II. 학교도서관기준 설정과정

1. 학교도서관기준의 목적

학교도서관기준의 목적은 영국의 경우 1) 학교도서관의 이론적 근거 제시, 2) 학습기능 교육과정의 개발, 3) 학교도서관의 관리정책, 4) 학교도서관에 실제기준을 제공하는데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1)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에의 지적 물리적 접근의 이해, 2) 전 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도서관의 통합, 3) 학교구성원 간의 협력체계 확립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1) 학습과 교양 및 취미자료 제공, 2) 직원, 자료, 시설의 정비와 충실, 3) 학교도서관운영의 구체적 본보기 제시에 두고 있다.

영국은 교수와 학습에서 자료원 제공을, 그 자료원과 학습이론의 관계에서 학교도서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국은 첨단정보체계를 의식하여 ‘정보에의 지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이라 표현하며 일본은 학습 교양 취미 자료제

공에 중점을 두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학교도서관 관리정책과 학교교도서관의 정비와 충실을 목적으로하고, 미국은 이미 정비된 관리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도서관内外의 협력체제 확립을 주장한다. 영국과 일본은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 기준이나 구체적 본보기지를 제시하여 아직 양적 기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은 학습기법 교육과정개발을, 미국은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정보처리이용기법인 정보활용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학교도서관기준의 목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나 3국이 같이 학습자료원 제공과, 각기 다른 수준에서 학교도서관의 정비, 관리정책, 협력체의 구성을 목적한다. 또 영국과 일본은 운영의 구체적 본보기를, 영미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기법개발을 목적하는 것이 유사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기준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자료 제공과 그 활용과정에서 학교도서관운영의 양적, 질적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처리이용기법 또는 학습기법을 개발하는 정보능력(information literacy)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학교도서관기준 설정의 주체

영국의 학교도서관기준은 LA의 책임하에, 미국학교도서관기준은 ALA산하의 AASL와, NEA산하 AECT의 공동 책임하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일본 학교도서관기준은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SLA)와 문부성의 책임하에 제정되었다.

이처럼 각 학교도서관기준은 전문단체나 국가기관의 책임하에 제정되었다. 이는 학교도서관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나 전문단체가 주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은 1988년 교육재건법 시행 차원에서 교육과정연구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을 연구개발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LA가 학교도서관 캠페인을 주도하였고, 1970년에 “학교도서관자료원센터”로 제정하였고 1977년에 “학교도서관자료원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1992년에 “학교학습자료원”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학교도서관기준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전국영어교사회가 주최가 되어 최초의 기준을 1918년에 설

정하였고 그 실무책임은 C. Certain이 담당하였다. 그 후 교장회의,ALA전후개혁위원회를 거치고, 1958년 국가방위법(NDEA), 1965년 초중등교육법(ESEA) 및 Knapp재단 연구를 기초로 1960년부터 전국 도서관계인 ALA의 AASL과 전국 교육계 전문단체인 NEA의 AECT가 공동책임으로 개정하여 왔다. 1981년 교육통합개선법(ESCI), NCLIS 및 교육성의 계속되는 연구개발과 정책제시에 힘입어 1988년 6차 개정된 “정보활용력”이라는 공식명칭의 기준이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문단체인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기초하여 제안하고 문부성이 1949년 학교도서관기준으로 채택하였고, 1959년에 일부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9년의 기준은 영미에 비하여 이미 낡은 것이나 제정 당시 미국 교육사절단의 제의에 따라 설정된 기준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받았고, 현재 그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이상 영국 미국 일본의 학교도서관기준은 국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수차례 교육계와 도서관계가 연계하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협회와 단체가 공동책임 하에 계속 연구개발하여 기준을 제정하였고 개정하여 왔다.

3. 학교도서관 명칭

학교도서관에 관한 명칭은 영국의 경우 최초 기준(1970)에 학교교육에서 교수 학습에 소용되는 책과 자료를 포함한 ‘학교도서관자료원센터’라고 표현하고, 1977년 기준은 시청각자료까지 포함한 ‘학교도서관자료원규정’이라고 하고, 최근 기준(1992)에는 학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 ‘학교학습자료원’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25년과 1945년 기준에 ‘학교도서관’이라 표현하고, 1960년 기준에는 교수-학습의 자료인 ‘교학 자료 센터’라 하고, 1969년 기준에서는 시청각자료까지 포함한 ‘미디어센터’로 표현하고, 1975년 기준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도서관미디어프로그램’이라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학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기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도서관기준의 명칭에서 영국의 경우는 ‘학교학습자료원’이란 서명에 부재로 ‘LA 학교도서관지침(LA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이라하고, 미국은 ‘정보활용력’이란 서명에 부재로 ‘학교도서관미디어프로그램의 지침(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이라고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學校圖書館基準’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의 명칭은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자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그 근본은 건전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존재하는 도서관 즉 “학교도서관”이다. ‘기준’ 역시 일정한 양적 수준이 달성되면 질적 방향 제시와 권장의 ‘지침’으로 “기준”과 “지침”이 함께 혼용되고 있다.

4. 기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

영국의 경우 최신 기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은 1) 학습자료의 종합적 자료원임을 주장하고, 2) 학습기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3) 용이한 학습과 교수의 핵심인 것과, 4) 학교교육과정의 기본임을 명시하고, 학교도서관 자체가 국가정보협력망의 부분임을 명시하고 (LA, 1992, 13-14)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1945년 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목적과 기능을 천명하였고, 그 목적이 학교교육 목적과 동일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의 1988년 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은 1) 전 교육과정에서 정보의 선택, 검색, 분석, 평가, 통합으로 창조하는 학습활동에서 정보와 아이디어에의 지적, 물리적 접근, 2) 분별력있는 정보소비자와 능력있는 정보생산자를 격려하는 학습경험 및 정보 제공, 3)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자료원과 활동의 준비, 4) 교육과정전개에서 교수, 자문, 지도력의 발휘를 목적으로 한다 (AASL & AECT, 1988, 1-2)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1) 정보와 아이디어에의 지적 물리적 접근, 2) 정보와 아이디어의 접근에 평등과 자유

의 보장, 3) 읽고 보고 듣는 능력(literacy)의 습득, 4) 정보와 교학적 기술 이용에서 지도력과 전문지식 준비, 5) 학교 외의 자료원에 접근을 풍부하게 하는 협력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학교교육목적과 동일하다. 이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학습자료와 교양 및 취미 자료를 제공하는 봉사기관과 문제해결에서 도서관이용을 용이하게하고 독서습관 및 독서생활화 그리고 도서관생활을 통한 민주적 사회적 생활태도를 경험하게 하는 지도 기관으로서 도서관이용지도를 수행한다(圖書館教育研究會, 1992, 223)고 밝히고 있다.

‘학습자료원의 제공’은 영국의 경우 학습자료원의 종합적 자료 제공이라하고, 미국의 경우 학습과 교수의 자료와 경험에 대한 지적 물리적 접근이라고 하며, 일본의 경우 학습과 교양 및 취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학습기법’ 또는 ‘정보처리 및 이용기법(정보활용력)’의 개발과 교육은 영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국가정보협력망의 일부로 학습과 교수에 용이한 학습기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과 통합하여 학습과 교수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또 정보처리 및 이용기법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되면서 학교교육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도서관이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서습관, 독서생활화, 도서관생활화로 민주적 사회적 생활태도를 경험하게하는 도서관이용지도를 수행할것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학교도서관 기준은 영미와 비교하여 볼때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았고, 교수 학습 현장에 스며들지 않고 있어서 명분에 그치는 양상으로 그 실체적인 수행을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주요국가 학교도서관 기준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학교교육목적과 일치하고, 그 기능은 지적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교수 학습자료 제공과, 그 학습과 교수과정에서 습득되는 정보활용력인 학습기법 또는 정보

처리 이용기법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그 수행에 있다. 이로써 학교 도서관은 학습자원의 제공 뿐만 아니라 학습기법 교육을 통하여 평생교육과 연계되고 변화하는 미래 세계의 대처가 아닌 혁신의 전진기지로서 어느 관종 보다 그 교육적 기능이 뚜렷하다.

5. 학교도서관 기준의 내용

학교도서관기준의 구성체제는 영국의 경우는 그 골격이 관리와 직원배치, 환경구성, 학습자료, 학습기법, SLS(School Library Services:학교도서관봉사, 이하 SLS로 표기함)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학교도서관미디아프로그램, 학교도서관미디아전문가, 지도력과 계획 및 관리, 인사, 자료, 시설, 교육구 지역 주의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원칙, 기능, 직원, 자료와 정리, 건물 시설, 경비, 운영, 이용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최신 각국 기준의 중심내용은 직원, 자료, 시설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 할수 있다. 이것은 이미 1920년에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에서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추가된 것은 영국의 경우는 학습기법과, SLS를 중심으로 한 학습정보이용력과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미국의 경우는 기준 전체에 함축된 정보처리 및 이용기법과 학교도서관의 효과적 계획과 관리 및 교육구, 지역, 주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원칙과 기능 및 운영방침을 제시하고 15개항의 이용지도를 열거하고 있다.

다시 이를 요약해 보면 학교도서관 직원, 자료, 건물과 시설의 3요소는 기본이고 관리운영 및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도서관이용교육에서 정보활용력을 개발하여, 정보사회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III. 학교도서관기준의 구성요소

앞에서 분석된 영·미·일 국가별 학교도서관기준의 기본구조는 대체로 직원, 자료, 공간과 시설, 계획과 관리, 학습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항에서는 이 공통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직원

A. 직원에 대한 명칭

영국의 경우는 기준에 사서교사를 ‘전문직 사서’(chartered librarian)라 칭하고 (LA, 1992, 6), 미국의 경우는 사서(1920), 사서교사(1925), 학교사서(1945), 도서관미디어전문가(1960), 미디어전문가(1969), 학교도서관미디어전문가(1975, 1988)를 거쳐 최근에는 학교미디어전문가(Morris, 1992, 24)로 칭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학교도서관미디어전문가는 역대의 사서교사보다 그 자격과 역할 및 책임이 확대되어 있어 변형된 것이라는 견해이나, 분명히 사서교사이다 (Haycock, 1995, 227). 일본의 경우는 ‘司書教諭’라하나 사서교유강습규정 제2조에 수강자격여전이 ‘교사자격을 가진자’만 서서교사 강습을 받은 전문직 사서교사이다.

영국 1992년 기준 1. 18항이나, 미국 1988년 기준 61-64쪽, 그리고 일본 기준이 모두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직과 기술직의 조무원을 두어야한다고 각기 밝히고 있다.

B. 직원수에 대한 기준

영국의 경우 학생 600~800명에 전문가 1인, 기술인 1/2인, 사무원 1/2인, 학생 1000명 미만에 전문가 1인, 기술인 1인, 사무원 1인, 학생 1500명 미만에 전문가 2인, 기술인 1인과 1/2인, 사무원 1인, 학생 1500명 이상에 전문가 3인, 기술인 2인, 사무원 2인이다.

미국의 경우는 학생 300명 미만에 전문직 1/2인, 조무원 1/2인, 학생 500명 미만에 전문가 1인, 조무원 1인, 학생 1000명 미만에 전문가 1인, 기술인 1/2인, 조무원 1인, 학생 1500명 미만에 전문가 2인, 기술인 1인, 조무원 1인, 학생 1500명 이상에 전문가 3인, 기술인 1인, 조무원 2인이다(Morris, 1992, 197).

일본의 경우 학생 450명 미만에 겸임 전문가 1인, 900명 미만에 전문가 1인, 사무원 1인, 1800명 미만에 전문가 2인, 사무원 2인, 1800명 이상 전문가 3인, 사무원 3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체로 영국은 학생 600명당 전문가 1인, 미국은 학생 500명당 전문가 1인, 일본은 학생 900명당 전문가 1인으로서 대별되나 각국의 사회여건과 교육변화, 문화 및 시대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학교마다 전문직 사서 1인(LA, 1992, 22)을 강조하고 국가공동위원회가 정한 지위 S01/S02등급(잉글랜드와 웨일스), 또는 AP IV/V등급(스코틀랜드)의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1969년 기준에서 학생 250명 당 전문가 1인을 추천하였으나 필요한 기술인과 조무원을 추가하여 재조정하고 있다. 1988년 기준에는 학생 1000명당 전문가 1인, 기술인 1인, 조무원 1인을 추천하고 있어 학생 500명당 전문가 1인으로 간주된다.

일본은 1959년 개정기준에서 현장요구에 의한 자료와 시설 면적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교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고 학생 900명당 전문가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1960년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상 분석된 것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본적 직원기준은 학생 500명당 전문가 1인이 합당하고 전문사서를 위한 조무원 또는 기술인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C. 사서교사의 자격과 자질

영국·미국·일본 3개국이 모두 사서교사로서 교사와 사서의 이중 자격과 자질을 갖춘 전문직을 요구하고 있다.

사서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영국기준의 1. 13항과 미국기준의 60~61쪽은 대학원과정 이수를 기본으로 한다. 그 외에 영국은 교육현장에서 교수경력과 학교도서관 실습 및 관리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司書教師講習規程(昭和 29年制定, 93年 最終改定, 文部省 第 34號) 제 2조에 ‘교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강할 수 있다’고하여 교사와 사서의 2중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직의 자질에 대해서 영국의 경우는 1970년 기준에서 새로운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적’, ‘전문적’ 자질을, 1977년 기준에서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는 전문인의 기법, 태도, 신뢰를 자질로 요구하고, 1992년 기준(1. 13~17)에서는 경험, 지식, 기술의 현장실습과정(지도자있는 1년 또는 지도자없는 2년)을 반드시 요구한다 (LA, 1992, 20~21).

미국의 경우 1920년 기준에서는 단순히 사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1925년 기준에서 교사자질을 요망하고, 1945년 기준에서 교사보조를 요구하고, 1960년 기준에서 교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1969년 기준에서 정보전문가의 자격을 요구하고, 1975년 기준에서 교수학습의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1988년 기준에서 ‘정보전문가, 교사, 교학의 상담자와 협의자’임을 제시한다. 이로써 역대 기준이 사서교사의 자질 향상을 전망하게하는 발전적 단계를 나타내고 (Morris, 1992, 32)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교사자격을 가진 자만이 사서교사강습을 받을 수 있다.

D. 사서교사의 이수교과목

영국의 경우는 “정보의 관리와 조직 및 배포, 도서관정보봉사의 관리, 범세계적 도서관과 협력망 이용기술에서 속련”(LA, 1992, 21)을, 미국의 경우 “도서관정보학, 교육, 컴퓨터케션 이론과 실제, 공학기술”(AASL & AECT, 1988, 66)을, 일본은 “학교도서관통론, 관리와 운용, 선택과 정리, 도서이외자료, 학생의 독서활동, 학교도서관 이용지도”의 수강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수교과목은 사서의 자질인 도서관학과 정보학, 교사의 자질인 교육학, 그리고 정보사회변화에 대비하여 컴퓨터케션과 과학기술개발에 따른 공학기술 및 범세계적 정보망을 섭렵하게 하므로서 변화하는 세계를先導할 자질을 구비하게 하였다.

E. 사서교사의 책임과 역할

영국의 경우는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자료의 조직 관리 및 효율적 이용, 교수 학습의 협의, 학생의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습관 형성, 상상력과 창조력 배양을 제시하고(1장), 미국의 경우는 21세기에 대비한 “정보전문가, 교사, 교수학습의 협의자”(3장)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자료제공봉사”와 “교육적 지도”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F. 사서교사의 재교육

영국의 경우는 「……전문직 직원은 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갖어야한다」고 (1, 20항) 명문화하고, 미국의 경우는 사서교사가 계속 재교육활동에 참가해야한다(AASL & AECT, 1988, 67)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재교육은 규정하지 않고 ‘학교도서관사서교사강습규정’에 의하여 1995년에도 18개 대학에서 사서교사강습회를 계속하고(日本圖書館協會, 1995, 107) 있다.

자격과 자질에서 영국과 미국은 대학원과정을 기본으로 교육적 영역과 도

서관적 영역을 이중자질로, 특히 영국은 경험 지식 기술을 위한 실습(internship)을 강조한다. 각국은 이수과목을 정보의 관리 조직 및 배포를 바탕으로 하되, 영국은 정보 협력망 접근기술에의 축련을 명시하고, 미국은 더 발전적으로 교육학, 컴퓨터이론과 공학기술을 제시하므로 교수 학습에서 선행적 지도력을 갖추게 하였다. 각국이 최신의 개발경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도서관직원은 한 학교에 전문적 사서교사를 반드시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학생 500명 당 전문적 사서교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사서와 교사의 이중자격과 대학원 수준의 자질이 바람직하다. 사서교사는 이 사서와 교사의 자격만이 아니고 학교교육변화의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조화 있게 운용하는 先導的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학, 정보학, 기술 공학의 학문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더욱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학교도서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질과 책임을 갖추도록 계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자 료

A. 학교도서관 자료에 대한 명칭

영국의 경우는 주로 학습자료원(learning resource), 미국의 경우는 자료원(resource), 미디어(media) 또는 정보와 아이디어라고 하며, 일본의 경우는 圖書館資料라고 지칭한다.

B. 학교도서관 자료의 형태

학교도서관의 자료 형태는 면대면자료(1세대자료), 인쇄자료(2세대자료), 시청각자료(3세대자료), 전자 자료(4세대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기준 3. 4-5항에서 책 팜플렛 정간물 신문 도표 포스터 등 자료와 시

청각자료 카세트와 레코드 멀티미디어 등의 자료, 그외 상호작용 마이크로자료, 위성 및 CATV, VideoText, Teletext, On-line 데이터베이스, CD-Rom software 등의 정보기술을 요구하는 전자 자료 (LA, 1992, 38)까지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는 기준 6장 '장서의 범주'와 '장서개발'에서 인쇄자료, 오디오, 비디오, 마이크로 자료와, 첨단의 전자 미디어 등 정보기술을 요구하는 자료(AASL & AECT, 1988, 70-73)를 포함한다. 일본의 경우는 기준 D '자료의 종류'에서 아직 인쇄자료가 주축이고 시청각 자료와 학생작품등이 첨가되었다.

C. 학교도서관자료의 기준

영국의 경우는 기준 3. 30~40항에서 학생 1인당 평균장서수가 15~18권으로 최소 8000책이고, 미국의 경우는 기준의 부록 A에서 산출하면 학생 1인당 평균장서수가 40권이며, 일본은 기준 D에서 학생 1인당 평균장서수가 5권이다. 영국은 자료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연간예산할당을 계속 제시하고, 자료의 평균수명을 7~10년으로 정하며, 기준 3. 25항에서 10~30년된 자료가 총 장서의 2/3이면 흥미없는 학습자료원으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LA, 1992, 42) 있다. 미국은 1920년 기준에서 학생 1인당 6~8권에서 시작하여 6차 개정을 거치면서 양적 수준은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1988년 지침에는 부록 A에서 실제적인 3수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도 자료의 질을 고려하여 오직 연간 증가율만을 0. 5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D. 학교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영국의 경우는 교육구 SLS(학교도서관봉사)의 장서개발계획에 따라 논리적 방법으로 자료를 전산화할 것을 기준 3. 50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준의 6장 중 '자료의 조직, 유지, 열람'에서 장서개발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서지적 조정과 자료조직의 자동화를 명시하고 있다(AASL &

AECT, 1988, 78~80). 일본의 경우 자료의 선택 및 제작기준에 따라 NDC와 NCR로 자료를 조직하도록 기준 E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SLS의 중앙화된 협력체제로 학교도서관 자료를 확보하도록 기준 5. 7~11항에서 제시하고, 미국은 기준 6장 중 '학교의 정보 접근'과 8장에서 교육구, 지역, 주의 협력체제로, 학교 외의 자료까지 확대하여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AASL & AECT, 1988, 80~82, 102~112). 일본은 학교 외의 자료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도서관자료의 형태는 단순한 인쇄자료에서 전자식자료까지, 내용은 이용자의 넓은 흥미와 능력 및 교과목에 연계되는 다양한 정보 자료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Morris, 1992, 282). 그러므로 학교 도서관은 연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내외에서 자원공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자료도입을 규정하며 자료의 양적 지침보다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장서개발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3. 공간과 시설

학교도서관 3요소 중 마지막은 공간과 시설이다. 학교도서관 공간과 그 위치, 면적, 공간 배치와 기타 환경 설비에 의한 학교도서관의 분위기조성까지 포함한다.

A.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위치

영국의 경우는 교수와 학습의 자료제공과 그 활동을 연계하여 학습자료의 중심적 위치와 접근이 용이한 교수와 학습의 활용공간을 마련하도록 기준 2. 15항에서 규정하고, 미국의 경우는 기준 7장 '기능과 공간'에서 이용상 중심 위치에 있는 자료활용에 방해받지 않는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B. 학교도서관의 공간 면적

영국의 경우는 학교도서관의 ‘최소 기능과 그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학교 최소교수공간의 1/10공식”을 기준 2. 9항에서 규정하고, 학생 1인당 1. 86m²~2.3m² (LA, 1992, 28)를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준 7장에서 ‘공간배치’와 ‘설비 비품’을, 부록 C에서 ‘시설기준’을 학교교육 계획과 연계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할 것과 이용자수의 15~20% 또는 25%까지 수용할 공간 (Morris, 1992, 228)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재적생수의 10%로 학생 1인 당 2.18m²를 마련하도록 기준 F-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은 영국의 경우는 학교도서관기능에 맞는 공간배치를, 미국의 경우는 공간과 함께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설비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고려하고 있다. 각국이 공히 학교도서관의 환경조성을 유지하는 자금 확보를 기준속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R. M. Braude(1988, 257)에 의하면 “자금확보는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의 실천을 위한 촉매물로써 그 목적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밝힌바 있다.

C. 학교도서관의 공간배치

영국의 경우는 기준 2. 12항에서 자료의 축적, 평가, 전시, 목록과 색인, 대출대, 자료, 개인연구와 그룹활동, 직원사무실, 계획과 정리실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준 7장 중 ‘공간배치’와 부록 C에서 교수와 학습, 협의와 계획에 필요한 공간으로 읽고 듣고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열람실, 그룹 활동과 다목적 활동영역, 자료의 조직 저장 전시 및 분배 영역, 시설유지 및 조직 관리 조정기능 영역, 컴퓨터실, 직원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준 F-1-3)과 F-2항에서 열람실, 시청각실, 연구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이용상 중심에 있어야하고, 교수와 학습 활동에 연계된 자료의 준비와 그 활용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 기준은 학교교수공간의 1/10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 환경조성과 유지 예산은 학교도서관 목적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한다. 학교도서관의 공간배치는 다양한 자료를 다원화하는 방법과 다양한 설계에 의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학습기법의 실험실로서 공간과 시설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환경조정 학교도서관의 수준을 한 눈에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4. 관리 및 협력체제

정보화사회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효율적 접근은 제도적 계획과 효과적 관리 및 그 협력체제에 의존하게 된다. 관리는 “계획 실행 평가의 주기적인 순환과정”이고 “계획은 도서관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누구의 책임하에 행할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문제해결의 가장 강력한 도구”(Braude, 1988, 246–253)이기 때문이다.

A. 학교도서관의 관리

영국의 경우 관리는 ‘훈련받은 전문직 공인사서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학습자료원을 중앙집중화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는것’(LA, 1992, 17)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집중화된 학교도서관과 교육과정 간의 관리는 학교전체에 중요한 일이고, 상급수준의 학교관리위원회에서 수행되어야한다. 적절한 관리는 도서관정보봉사의 책임자와 가르치는 집단의 책임자 간의 협조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책임자, 교사, 부모대표가 공동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교장은 교육과정개발의 감독, 학교도서관책임자는 교육과정 간의 학습기법 개발에서 각기 책임을 규정하고, 이 효율적 관리정책을 기준 1. 10 항에서 강조하고 있다. 학교교도서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는

핵심 문제로 규정하고 충분한 재정 배당책임이 점차 교장과 영주에게 있으므로써 재정이 학교도서관 계획에 중요한 항목임을 밝히고(LA, 1992, 72)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준 4장 “지도력, 계획, 관리”에서 사서교사가 지도력을 발휘할 것과 동시에 학교구성원간의 협동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동체제의 구성원인 교장, 학교도서관책임자, 학생, 부모, 교육구 도서관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는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전진한 계획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과 그 절차 및 업무를 결정하고 예산을 개발해야 한다. 예산계획은 교장 교육구장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필요한 3요소에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적절한 직원 배정과 프로그램의 조직과 지휘 및 그 진행과 마케팅을 수행해야 한다(AASL & AECT, 1988, 53-54)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운영”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습활동의 중심적 기관이고 레크레이션 장소로써 계획적으로 일관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비는 공비로 지불하고 경상비는 학생 1인당 年 소학교 200圓, 중학교 350圓, 고등학교 450圓으로 규정하고(圖書館教育研究會, 1992, 224) 있다.

영국은 국가차원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중앙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 간 학습기법을 개발하는 사서교사와 교사 간의 책임을 분명히 한 관리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준의 결론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학교 도서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이 핵심 문제이다(Funding is a key issue)”라고(LA, 1992, 78) 예산 확보가 학교도서관계획의 핵심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학교도서관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사서교사의 지도력과 구성원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의 조직과 진행 및 마케팅을 강조한다. 각국이 공히 기금확보와 영국과 미국은 관리정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B. 협력체제

학교도서관협력체제는 교내 관리 운영뿐 아니라 교외 자료원의 협력망 접근까지 고려한다. 영국의 경우 “SLS”장에서 학교도서관을 국가나 지역의 정보협력체제나 협력망의 일부로 보고 중앙집중화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SLS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88년 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제도적 계획과정과 학교내 구성원간의 협동을, 1975년 기준에서 교외 교육구, 지역, 주의 협력망을 권장하였고, 정보화사회에서 학교도서관에 관한 학교내외의 커뮤니케션 연결고리로서 협력체는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하다 (AASL & AECT, 1988, 105)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각급 학교도서관운영의 구체적 실체를 제시하였을뿐 아직 협력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관리는 학교설립 계획에서부터 효율적 관리체제의 확립과 21세기를 지향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결정이 우선 이루 어져야한다. 효율적 관리는 학교구성원의 제도적 참여와 협력, 재정기금과 연간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 학교도서관에서 학교 교육과정수행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관리정책은 계획 실행 평가의 순환과정에서 계속 수행 및 개정될 수 있어야한다. 이제 학교도서관 협력체제는 정보사회 도서관에서 정보원 확보와 봉사체제확립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5. 학습기법(정보활용력)과 교육과정

정보사회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이 학습자료원 제공과 학습기법 교육 또는 정보활용력 개발에 있다. 학습기법은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기술이고 공부할 수 있는 또는 공부해야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적절한 범위에서 학교 교육과정 간(across curriculum)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한다. 학생은 여기에서 적절한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내용을

읽고 해석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 수집 분석 평가하고 종합하여, 창조하는 기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 기법은 대개 학교생활에서 공적으로 시작하여 일생동안 점차 개발되어가는 평생교육의 기본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미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의 자료원을 소장하는 靜的인 기관만은 아니다. 교수 학습의 자료원 환경에서 첨단 미디어와 더불어 교육 과정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교수 학습의 실험실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학생으로 하여금 정보활용력을 갖춘 분별력있는 정보소비자가 되게하고 나아가 능력있는 정보생산자가 되게하는 교육을 받는 교수 학습의 역동적 프로그램 현장이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에서 학교도서관의 미래를 새로운 변화로 전망하게 한다.

학습기법은 영국의 경우 학생중심 학습활동의 핵심으로 기준 4. 1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법은 학생이 공부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법으로 학습의 계획, 정보의 소재확인 및 수집, 선정 및 평가, 조직 및 기록, 의견교환 및 실현,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복잡하고 세련된 기술로 학습기법 교육과정에서 이수되는 것이라 밝히고(LA, 1992, 53-57)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88년 기준 전체에서 '정보활용력'의 개발을 암시하고, 사서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정보전문가, 교사, 교학의 협의자와 상담자로써 교육 과정 전개와 더불어 학생에게 정보처리 및 이용기능인 정보활용력을 기르게 하는 데(AASL & AECT, 1988, 26-39) 있다. 그리하여 학교도서관은 학생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학의 자원(instructional resources)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의 탐색, 검색, 이용을 터득하게 한다. 사서교사는 교사에게 교수자료 선택과 전략을 협의하고 학생에게 학습자료 선택과 전략을 상담하게 하므로써 학생이 정보처리이용능력을 습득하게하고 아울러 정보기법 교육과정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도서관자료는 아직 전자 자료를 언급하지 않고, "도서관의 이용지도"에서 15개 항의 지도 항목을 열거하고(圖書館教育研究會, 1992, 225) 있을 뿐이다. 영미에 비하여 정보화사회에 대비되는 정보능력습득에 적

합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이용지도에서 최신 학교도서관의 개념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학습기법, 미국의 정보활용력인 이 정보능력은 미국 1920년의 기준에서 밝힌 교재자료지원에 그 기원을 두고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에 의하여 교수자료, 독서자료 안내, 독서습관형성, 독서생활화, 도서관이용, 도서관기능, 정보처리 이용기술로 변천되어왔다. 이 학습기법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고 교육과정 間에 어느 교과목에서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학생의 다른 기초적 기법과 더불어 계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므로써 학습기법 교육과정 개발은 현대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의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이 학습기법의 개발은 정보사회에 대비하는 분별력 있는 정보소비자와 능력있는 정보생산자의 정보활용력 개발이고, 나아가 평생 수학능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IV. 영국·미국·일본의 학교도서관기준 특성

이상에서 분석한 영미일 3개국의 최신 학교도서관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영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특성

영국의 1992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지침은 양과 질적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지침은 교육과정 간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내외의 학습자료를 중앙화된 자료원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학생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학습자료원

이다. 영국 1988년 교육재건법에 따른 “국가수준 교육과정”(1988)의 변화는 ‘학습의 내용’과 더불어 그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중심 학습에 있다. 따라서 전체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학교도서관의 자료 탐색과 처리 및 이용 능력은 그 기본이 된다. 이러한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내외에 풍부한 학교도서관 자료와 정보자료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1984년 LISC의 ‘학교도서관’에서 밝힌대로 학교도서관은 기본으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에서 ‘전전한 학습과 효과적인 교육 과정’의 기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지침은 학교도서관 관리에서 그 정책과 기금 및 행정부 역할이 중요함을 규정한다.

학교도서관관리의 정책과 효과적 예산은 학교도서관의 계획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관건이고 그 책임은 학교와 지역교육국에 있다. 정책은 ‘목표와 임무를 정의하며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밝히는, 관리에서 우선하는 계획과정이고(Braude, 1988, 247-8), 예산은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를 실천 하게하는 촉매물’이고 그 ‘목적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의 필수 사항이다(Braude, 1988, 257). 학교 재정의 배당은 학교지역관리에서 교장과 각 영주에게 맡겨졌다. 이 지역교육국은 SLS를 제공하므로써 학습자료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잘 관리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모든 학교는 학교도서관에 학습을 지원하는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학교도서관 지침 및 권고안에서 그 계획과 정책 및 재정적 책임을 명기하고(LA, 1992, 73) 있다.

셋째, 학교도서관지침은 학습기법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현대 학교교육과정은 배우기 위한 학습과 정보를 다루기 위한 학습을 강조하므로써, 정보처리 및 이용능력인 정보능력이 교육과정의 기본이 되고 학습과정의 핵심이 되게 한다(LISC, 1984, iv). 이 배우는 방법의 학습은 이미 오래된 주장이나 학습자료 처리와 이용이 학교 전체 학습기능 정책에서부터 계획되어야하고, 학생중심 학습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활동의 핵심기술

로 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학습기법인 것이다. 모든 학교는 학생의 학습 활동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이 학습기법을 정기적인 교육과정에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또 각 교과목 간에 이 기법의 훈련기회를 준비하고, 여기서 교사와 전문적 사서가 공동책임을 진다. 특히 최근 전문적 사서들은 교육과정에 이 학습기법의 훈련을 도입하고 학습기법 교육과정에서 교사들과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학습기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노력에 의하여 습득되는 것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은 이 학습기법을 다른 기술과 같이 학교교육과정에 의해서 배우고 실습하고 평생을 통하여 연구의 기본기술로 활용하게 한다. 1988년 “국가수준 교육과정”(Bernhard, 1994, 15, Kinnell, 1995, 20-21)에 따라 이 학습기법은 학습과정에서 핵심이 되었고, 학습기법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양되어야 하는 미래 학교도서관의 기본 기법임을 제시하였다.

넷째, 학교도서관지침은 학교도서관의 관리와 국가정보협력망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1992년 지침은 학습자료원의 직원 자료 시설 기금을 운영의 4요소로 제시하고, 효과적인 도서관정보봉사 개발에 구체적인 양적 지침을 명시하였다. 한편 도서관정보봉사의 관리구조를 도표로 제시하였고(LA, 1992, 12) 전문적 사서의 임명, 훈련과 기술, 역할, 경력, 자질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특히 교육과정 간(across curriculum) 학습기법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시설에서 최소교수공간의 1/10공식(1981년 교육법에 근거)을 적용할 것과 서가높이(최대 1950mm) 및 장비체크 등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습자료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전자자료까지 열거하고 학생 1인당 최소평균장서수는 11~13책, 장서수명은 10~7년으로 양적인 분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 장서의 요구량측정과 장서평가(LA, 1992, 41-2) 비용계산(LA, 1992, 47-9)등에 의하여 자료의 질적인 생기를 유지하게 한다. 이 지침은 SLS에 대한 권고안으로 학교도서관 설비 및 관리에 구체적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2. 미국 학교도서관 기준의 특성

미국의 학교도서관지침(1988)은 영국의 지침과 다르게 양적 인 것보다 질적 방향에서 학교도서관미디어프로그램(이하 학교도서관)으로 권고한 점에 특성이 있다.

첫째, 학교도서관미디어전문가(이하 사서교사)는 선도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1988년 지침의 사서교사는 과거의 정적이고 수동적 역할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거쳐, 학교도서관과 그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선도적 지도자로 규정되어있다. 그는 학교도서관을 생기있고 건전한 교육미디어센터로 계획 실행 평가하므로써, 교학에서 교사에게 자극과 충동을 내포하는 협의자이고, 학생에게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명확한 상담자이며, 교수학습 프로그램봉사와 교육적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뢰성있는 지도자인 것이다.

Rocco Staino(1989, 10)는 ‘사서교사를 첫째 학교도서관의 경향, 공학기술, 철학을 알아서 이끄는 지도자, 둘째 선도적 지도자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 방법과 연구조사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선도적 지도자임을 밝혔다. 또한 Morris (1992, 27)는 “사서교사란 1) 학생과 교사에게 정보자원의 확인과 정보와 idea에의 접근을 알리는 ‘정보전문가’, 2) 정보기술, 자료제작, 정보와 교학의 공학기술 이용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을 하는 ‘교사’, 3) 각 교사와 학생에게 교학적 계획의 추천에서 선형적 봉사를 하는 ‘교학의 협의자와 상담자’로써 역동적이고 교육적 지도자”라고 말하였다. 1988년 지침에서 규정한 사서교사는 전체 교육사회에서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하여 협조를 결속시키고, 조성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선도적 지도자라고 할수 있다.

둘째, 1988년 지침은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 사이에 협력체제를 강조한다.

1975년 기준은 학교間 그리고 교육구와의 관계협력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1988년 지침은 학교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조한다. 교장 교사 학생 사서교사 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은 학교도서관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Alliance for Excellence 1984). 특히 사서교사는 학교교육프로그램에 기여하고 (Kulleseid, 1987, 155–173), 학교 구성원의 협조로 학교도서관 계획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모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과의 협력이다.

교장은 학교전체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에서 ‘학교 교학프로그램에 대하여 넓은 견해’를 갖는 전문가이다(Pennoc, 1988, 118). 사서교사는 정보기법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교장에게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교장은 사서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의 질적 교육기능을 요구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각자업무를 분담하는 교사와의 협동은 필수적이다.

교사와의 동료적 협력체제는 오래된 것이고 교학의 팀요원으로 두사람 사이의 공동 계획과 이행 및 평가를 전제로 한다(Morris, 1992, 29)는 것이다. 교과목의 주제내용은 학교内外의 유용한 자료와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게하고, 가르치는 의무는 서로 분담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 계획이므로 가르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협동자가 가르쳐야하고, 가르치는 주제내용의 탐색과 표현에서 정보기능은 교육과정속에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 Michael Eisenberg(1987, 2)는 사서교사란 “교사와 같이 학과목 일정, 교수목표, 계획된 수업을 수행하는 교사”로 보았다. 이와 같이 교사와의 협력은 교학의 계획에서 발생되고 정보기법 교육과정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학생과의 협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봉사를 계획 평가 조정하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봉사하는 때 이루어진다.

셋째, 이 지침은 학교내의 커뮤니케이션의 연결고리를 강조한다.

학교도서관이 협력체제에 의하여 그 기능을 다 하려면 학교内外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커뮤니케이션 연결은 학생 학습의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전 교육과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사서교사와 교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학교도서관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교장에 대한 연, 월, 주별 공식 보고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과정이 되며(K. K. Edward, 1989, 31) 연차보고는 도서관봉사의 선전, 평가, PR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예산 또는 실행적 시범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로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을수 있다.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에게 교육과정 내용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수집 기술까지 동시에 가르치게한다.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교사와 함께 학습자료 뿐 아니라 정책개발, 자료선택, 계획활동에 학생을 참가하게하고 이로써 학생이 일상생활을 쉽게 터득할 수 있게 한다.

1988년 지침은 학교내외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특히 내외 협력망을 통하여 실제 정보에의 접근방법을 변화시킬 수있고 자료에 의한 재정적 압박을 제거할 수 있다. 사서교사는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교수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방법을 개선하여 양질의 자료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여기에서 학교도서관의 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을 개발하는 시발자, 선도적 지도자의 기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 지침의 사서교사는 변화의 대행자(agency)이다.

21세기는 정보접근과 이용에서 새로운 기술과 그 방법의 개발이 공존하는 신속한 변화기이다. 사서교사는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변화의 대행자로 활약한다. 학교의 교학적 요구에 맞추어 도서관프로그램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선도적 시발자라는 뜻이다. 주요한 것은 사서교사가 스스로 교학의 협의자의 역할을 自覺하는 일이다. 곧 교수학습의 전략과 실제에 참여하는 전문가이고, 교육의 팀요원으로 교사에게 제공할 무엇인가를 갖고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해야하는 것이다. 또 교학 과정에서 정보기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한다. Sue Walker(1988, 22)는 ‘교사의 역할로 정보기법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학생 교사 부모를 가르치는 방법(행동)을 모형화하는 책임이 있다’고하여 ‘정보전문가’와 ‘교사’ 역할에 의한, 그리고 ‘교학의 협의자와 상담자’로써 사서교사의 존재가치를 밝혔다.

1988년 지침은 사서교사란 정보전문가, 교사, 교학의 협의자와 상담자로써 상호작용하며, 현존 학과목을 통하여 전체 정보기법 교육과정을 이행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학교교육에서 제도적인 계획을 구축하고, 학교구성원과의 의견을 소통하는 협력망을 개발하여야 한다. 동시에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만을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생의 학습을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그 목적을 조정, 전행, 평가하여 미래 변화를 개발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일본 학교도서관기준의 특성

일본의 학교도서관기준은 제정 당시 단행 학교도서관법으로 법제화되었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일본 학교도서관기준은 민간전문단체에서 제안하고 국가기관인 문부성이 제정한 양적 질적 기준이다.

학교도서관협의회가 문부대신 자문에 답신한 ‘학교도서관의 충실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기초로 학교도서관기준을 제안하고 문부성이 이를 승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포괄적 기준이며 학교도서관 정비와 충실을 기하여 학교도서관 전반에 걸쳐 제시한 지도적 기준이다(深川, 1974, 14). 또 운영의 자세한 사항을 구체적 수치로 포괄하여 제시한 양적 기준이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선택 수집 정리하고 이용하게 하여 독서로 풍부한 인간형성을 시도하며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질적 기준이기도 하다.

둘째, 일정한 수준을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고 학교도서관을 계속 정비하며 조정해나가는 최저 기준이다.

1949년 기준 부칙에 3년내에 이미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면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 2책’이라는 1949년 기준이 달성되어 1959년 기준에서는 학생 1인당 5책과 연간증가률 0.5%까지 포함하여 상향 조정되었다. 또 도서관이용교육이 첨가되었다. 학교도서관이 이미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면 다시 새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학교도서관기능을 탈성하게 하는 미래 지향의 최저 기준인 것이다.

셋째,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 전체상을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여 행정당국과 학교도서관운영자로 하여금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의 지표가 되게 하였다.

학교도서관 설비와 육성에 충실을 기하여 학교도서관운영 전체를 표현하고, 학교도서관담당자, 교사 및 일반인에게도 학교도서관을 알리는 계몽적 역할을 하였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전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봉사기관이고, 도서관이용을 경험하게하고 독서를 생활화하게하며,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지도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직원, 시설, 자료를 3요소로 명시하고 국가 및 교육위원회가 그 설치와 육성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직원의 배치나 자료 시설 설비등에 대한 수량적 계수가 분명하여 최저 양적 측면의 정비를 이루게 하였다. 1959년 기준의 개정은 학교도서관 이용지도를 삽입하여 질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였고, 각 교육위원회와 각 지역 학교도서관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

넷째, 이 기준은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에 없어서는 않되는 기관으로 규명하였으나 교육과정 전개에서 그 위치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전후 일본 교육행정상 ‘학습지도요령’은 昭和 22(1947)년에 고시되고 10년마다 개정되어 平成 원년 1989년에 6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1958년 학습지도요령 총칙에서는 지도의 계획작성이나 일반방침 종교교서와 기타 자료, 교구 등에 대한 연구에서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심을 보였다. 1968년 총칙에는 학교도서관을 계획적으로 이용한다고 기술하여 계획 이용을 강조하였고, 1977년 총칙에는 학교도서관 이용방법을 취득하게 기술되어 있다. 1989년 총칙에도 학교도서관의 계획적 이용에서 기능의 활용에 힘쓰고, 학교도서관 이용이나 정보의 활용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전개에서 학교도서관의 이용과 이용지도를 계획적으로 언급하였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문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學

校圖書館基準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전개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에서 운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논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핵심이고 학교의 교수와 학습활동의 중심”(LA, 1992, 11)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학교도서관이 ‘국가수준 교육과정’변화에 맞추어 교학의 기반임을 명시하고, 미국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라는 사실 이외에 교육과정의 계획, 수행, 평가에서 선도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도서관’만이 아닌 ‘학생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이 학교도서관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이론적 근거를 밝힌 것에 비하여, 일본은 학교교육에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기관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학교도서관개발의 책임이 국가와 교육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한 것에 비하여, 미국은 그 개발의 책임소재를 넘어서 각 학교와, 교육구 간의 협력체제로 발전시키고 학교내외 협력체의 핵심이 캠유니케션 연결고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에 대하여 영국과 일본은 아직 최저의 기준을 규정 한데에 비하여, 미국은 양적 기준을 넘어 기술적인 질적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정보사회에 대비하는 변화의 주도적 기관으로 그 존재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영국 학교도서관을 통한 학습기법 교육과정은 미국의 정보기법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활용력의 교육을 체계화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일본은 아직 이용지도(15개항)를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정보 소유나 정보소재 파악보다 정보처리 및 이용능력인 정보활용력이 그 성패를 좌우하므로 학습기법 교육과정은 학교도서관의 고유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V. 결 론

이상을 요약하면 영국 1992년의 기준은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이며 '국가수준 교육과정'개혁이 학교도서관개발과 맞물려 공동연구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정체과 재정적 고려를 명시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습기법은 공부하는 학생의 기본이고 교과목 간에 기초로써 학습기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하는 학교도서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1988년의 기준은 학교도서관의 학습과 교수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장 사서교사 교사 학생 부모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제도적 협력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각 구성원 間에 각각의 컴퓨터케션은 효율적 관리와 내외 자료확보의 관전으로 보고, 사서교사는 전체 학교사회에서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서 구심적 위치를 확립하는 선도적 지도자로써, 정보전문가, 교사, 교학의 상담과 협의자로써의 역할과, 변화의 대행역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1988년 지침은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정보기법 교육과정개발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닌 활기있고 영향력있는 존재로,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의 중심 실체로, 미국 학교도서관을 교육변화와 그 제전의 센터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1959년의 기준은 학교도서관운영의 양적 질적 지도기준이며 그 설비와 정비의 최저기준이고 학교도서관의 간결한 전체상이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없어서는 아니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도서 및 도서관 이용교육을 주장하나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는 별로 찾을 수 없다.

영국 미국 일본의 학교도서관기준은 각 국가의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 여건이 같지않다. 그러나 그 설정배경이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교육개선의 관점에서 변천되어 온 사실은 분명하다. 영국 미국 일본의 최신 학교도서관 기준의 공통요소로 기준의 목적, 학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 인사, 자료, 공간과 시설, 관리와 협력체제, 학습기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한국

학교도서관기준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y &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s*. Chicago, ALA., 1988.
- Berhard, Paulette. *Bibliotheques scolaires en action : quelques realisations*, *ARGUS/Hiver*, vol. 22 no. 3(1944)
- Braude, Robert. M. *Administration : General Principle Applied to Health Science Libraries*, *Health Science Librarianship and Administration*. Chicago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88.
- Edward, K. K. *Principals perceptions of Librarians : A Survey*, *School library Journal*, vol. 35, no. 5(1988, Jan.)
- Eisenberg, M. *Changeing Roles of Media Specialist*, *Eric Digest*, 1987, May.
- Haycock, Ken. *Resourch in Teacher-Librarianship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ange*, *School Library Media Quaterly*, vol. 23, no. 4(1995, Sum)
- Kinnell,M. *Policy for secondary school library provision in Engand and Wal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7, no. 1(1995, Mar.)
- Kulleseid, E. R. *The Leadership Role of the Library Media Specialist*, in shirey S. Aron & Pat R. Scales(eds) *School Library Media Annual*. vol. 13. Lit tleton, Library Unlimitd, 1987.
-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mmittee. *School Libraries*.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84.
- Library Association. *Learning Resources in Schools: LA Guidelines for School Libraries*, ed. by M. Kinnell.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92.
- Morris B. J.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3rd ed. New Jersey, Bowker, 1992.

Pennnock, Robin. Trading Places : A Librarian's Route to the Principal's Office, *School Library Journal*, vol. 35, no. 1(1988, Sept.)

Staino, Rocco. Ask a professional, Ask a Librarian, *School Library Media Service Gram*, vol. 13, no. 3(1989, Spring)

Walker, Sue. Information Power : The Roles of the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vol. 17, no. 1(1988, Fall)

圖書館教育研究會編. 新編 學校圖書館通論.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92.

司書教師講習規程. 平成 3年(1991) 改定 省令 第34號 3條.

深川 恒喜. 學校圖書館 性格 役割, *學校圖書館*, vol. 518(1994,1) 東京, 1994.

An Analytical Study on Recent School Library Standards : Britain, United State and Japan

Hyo-Jeong Kim*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cent school library standards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Britain, United States and Japan. The examination is based on the changing process of standards and development of school library in the each countries.

To Suggest the model of reasonable standard for the activation of school library in Korea, the study has identified the common elements : staff, material, environments, management and cooperative system, and learning skill with curriculum of school library standard showed in the each of advanced countries.

* Professor,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